

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10. 12.>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,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

(제9조의7 관련)

1.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

시설 유형	입소기간	연장가능 기간 (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가. 출산지원시설 1)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2)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	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	6개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
나. 양육지원시설	3년 이내	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
다. 생활지원시설	5년 이내	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
라. 일시지원시설	6개월 이내	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

2. 입소기간의 연장사유

가. 모 또는 부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

나. 모 또는 부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경우

다. 모 또는 부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「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·훈련 중인 경우

라. 모 또는 부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

마. 모 또는 부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

바. 모 또는 부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

정을 이수 중이거나 학력인정 시험의 응시 신청을 한 경우
사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
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비고: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
장이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간과 별도로
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